

의안번호	2110952
의 퇴 인	안호영의원
회 답 일	2021.07.05.

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태권도공원의 조성 등(안 제9조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

- 현재 태권도관련 단체는 국기원, 태권도진흥재단, 대한태권도협회, 세계태권도연맹 등이 있으며 태권도단체별 관련 사업 현황은 [표]와 같음

[표] 태권도단체별 관련 사업 현황

사업명	2020(A)	2021(B)	증 감	
			(B-A)	(%)
합 계	43,221	40,093	△3,128	△7.2
□ 국기원	11,121	10,397	△724	△6.5
○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	6,218	6,234	16	0.3
○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공연	2,420	2,431	11	0.5
○ 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	1,000	1,079	79	7.9

사업명	2020(A)	2021(B)	증 감	
			(B-A)	(%)
○ 세계태권도 아카데미 운영	653	653	-	-
○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콘텐츠 구축	630	-	△630	순감
○ 해외 태권도 한마당 대회	200	-	△200	순감
□ 태권도진흥재단	30,300	27,996	△2,304	△7.6
○ 태권도 해외활성화	750	750	-	-
○ 태권도 평화봉사단 해외파견	2,000	1,000	△1,000	△0.5
○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	500	500	-	-
○ 세계 태권도 유·청소년단 캠프	200	200	-	-
○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	660	660	-	-
○ 태권도 산업실태조사	200	200	-	-
○ 글로벌 태권도 홍보	1,600	1,600	-	-
○ 중고교 태권도 수업지원	300	300	-	-
○ 태권도 새 품새 개발 및 보급	500	500	-	-
○ 태권스테이 운영	-	400	400	순증
○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	-	1,000	1,000	순증
○ 태권도 용품지원 (ODA)	147	297	150	102.0
○ 태권도진흥재단 운영	5,666	5,682	16	0.3
○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	14,067	14,107	40	0.3
○ 태권도 복합문화체험시설 설치	3,710	-	-	순감
○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설치	-	800	800	순증
□ 대한태권도협회	1,500	1,400	△100	△6.7
○ 관람형 태권도 대회	900	900	-	-
○ 남북 태권도 교류	300	200	△100	△33.3
○ 국제오픈태권도대회	300	300	-	-
□ 세계태권도연맹	300	300	-	-
○ 태권도 초청연수 (ODA)	300	300	-	-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전할 태권도 단체의 수 및 이전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·범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
$$\text{○ 추가재정소요액} = \sum_{t=2022}^{2026} [\text{이전할 태권도단체의 수}_t \times \text{이전할 태권도단체별 지원 비용}_t]$$

- 그러나 향후 이전할 태권도단체의 수 및 이전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·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국회예산정책처	사회비용추계과
과	장 이진우
추계세제분석관	임병화
연 락 처	02-6788-3739
	limbh@na.go.kr
